

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경비업 허가의 요건에서 교육장을 제외함(안 제4조제2항제3호).
- 경비업자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,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예외로 함(안 제7조제5항).
- 경비업자가 혼잡·교통유도경비업무를 위하여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배치허가를 받도록 함(안 제18조제2항제1호).
- 경비업자가 안 제7조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를 경비업 허가의 임의적 취소사유로 규정함(안 제19조제2항제17호).

II. 검토의견

- 안 제19조제2항제17호는 안 제7조제5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비업 허가에 대한 취소·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규정이거나 양 규정의 표현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. 그런데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은 전제가 되는 의무규정과 표리관계에 있으므로, 양 규정의 표현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.
- 또한, 제재규정의 위치는 인용대상조문의 순서에 따르는 것이 원칙인데, 안 제19조제2항제17호의 인용 대상 조문이 제7조제5항임을 고려하면, 이를 안 제19조제2항제2호의2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.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-------	---------

제7조(경비업자의 의무) ① ~ ④ (생략) ⑤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경비업무의 목적달성을 침해하지 <u>않는</u>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<u>대해서는</u>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. 제19조(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) 허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. <u>17.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는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</u>	제7조(경비업자의 의무) ① ~ ④ (개정안과 같음) ⑤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경비업무의 목적달성을 침해하지 <u>아니하는</u>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<u>대하여</u>는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. 제19조(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) 허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. <u>2의2.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업무 또는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</u>
--	---

- 개정안 부칙은 개정안의 시행일을 ‘공포한 날’로 규정하고 있으나, 개정안에 포함된 조문의 시행일은 모두 ‘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’ 또는 ‘2025년 1월 31일’이므로, 그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.

시행일	대상 조문
공포한 날	-
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	안 제4조제2항제3호, 안 제7조제5항, 안 제19조제2항제17호
2025년 1월 31일	안 제18조제2항제1호

- 가장 많은 규정이 시행되는 ‘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’을 시행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.

개 정 안	수 정 의 건
부 칙 <u>제1조(시행일)</u>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<u>제4조제2항제3호</u>, <u>제7조제5항단서</u> 및 <u>제19조제1항제2호</u>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, <u>제18조제2항제1호</u>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	부 칙 <u>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</u> 시행한다. 다만, <u>제18조제2항제1호</u>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- 기타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, 수정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주서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김 성 완)